

[별지서식 제83호] (제134조 관련)<개폐정리 2015. 6.30, 2020. 8.28>

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(일부)소멸확인(원)

귀사가 당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수령(어음수령의 경우 결제)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이 소멸(전부, 일부)되었음을 확인·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보 증 금 액		보증서 번호	
하 도 급 공 사 명		보 증 기 간	
하 도 급 계 약 금 액		계약이행종료일	
공사대금총수령액	(년 월 일 현재)		
미 수 령 공 사 대 금 (어음 미결제금액 포함)	(년 월 일 현재)		
비 고			

※ 용도 :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

일 일 년

주 소
상 호
대 표 자

(인)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 .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보증채권자 주 소
(수급사업자) 상 호
 대 표 자 (인)
 (연 락 처 :

인감대조

* 원인감(인감증명서 첨부) 또는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(인감)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